

의정정보

7

2016-7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부산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학술용역 관리 개선 요구 등 6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인천광역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5)
- ▶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 ▶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11)
-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13)
- ▶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6)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9)
- ▶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21)
- ▶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26)
-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8)
- ▶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33)
- ▶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35)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 ▶ 부산시의회 시 산하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학술용역 관리 개선 요구(38)
- ▶ 광주시의회 유해화학물질 정책토론회 개최 (41)
- ▶ 대전시의회 전국 최초 재난피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42)
- ▶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특강 실시 (43)
- ▶ 전북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44)
- ▶ 전남도의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토론회 개최 (46)

최근 제 · 개정 법령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5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인천광역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56)
- ▶ 강원도 속초시 – 조례 제명에 지방자치단체 명칭 포함 관련 (60)
- ▶ 강원도 홍천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 2016.9.4.] [부산광역시조례 제5399호, 2016.8.3., 제정]

□ 주요목적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

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3.] [경기도조례 제5328호, 2016.8.3.,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의 행위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가등의 위촉)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 전문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민간전문가등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④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⑤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 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
-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도의회 의원

2.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와 관련된 공무원
3.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은 성과보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당사자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수당)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운영 조례

[시행 2016.8.5.] [강원도조례 제4058호, 2016.8.5., 제정]

□ 주요목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센터”란 용도별·지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단말기(OBE)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속도·가속도·방위각·교통사고상황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DTG)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3. “버스정보안내기”란 버스의 위치, 도착예정시간 등 버스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대기 승객들에게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통합센터 구축·운영) ① 도지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버스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호환하기 위하여 통합센터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통합센터를 이용할 경우 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센터의 기능) 통합센터는 아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스운행정보, 기록정보 등을 통합 관리·운영
2. 버스운행정보의 분석·가공 및 제공
3. 버스운행정보 및 위반사항(결행, 단축, 경로변경 등) 통계자료 관리
4. 운수종사자 위험안전(과속, 급출발, 급정거 등) 분석 및 관리
5. 운행정보, 기록정보, 분석·가공정보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통합단말기 설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통합센터를 통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버스운행정보와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통합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버스정보안내기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 운행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터미널 또는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버스정보안내기에 송출하는 내용의 설정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도지사는 통합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장·군수에게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산자료의 보존) ① 통합센터에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장된 정보의 백업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백업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업된 파일의 보존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연계·호환과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시행 2016.8.4.] [경상남도조례 제4176호, 2016.8.4., 제정]

□ 주요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계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 2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및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6.8.4.] [경상남도조례 제4182호, 2016.8.4., 제정]

□ 주요목적

경상남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
4.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5.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담당교사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관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51호, 2016.8.1., 제정]

□ 주요목적

인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구리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위탁)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관련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학생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시행 2016.8.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114호, 2016.8.8., 제정]

□ 주요목적

부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하여 부천시장과 시민공동체가 함께 안전 위해(危害)요인을 찾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도심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공동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일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마을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마을”이란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이 확보되는 마을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 안전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지역 협의체를 말한다.
3. “원도심지역”이란 자연발생 부락을 포함하여 신흥도시의 주축을 이루었던 지역 중 재해예방이나 범죄예방, 생활안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누구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고 안전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마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지원함에 필요한 자문과 조사,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속성 있는 안전마을이 되도록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마을 사업) 안전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사업: 도로포장, 상, 하수도 정비 및 개량, 급경사지 정비, 산사태 우려 지역 정비, 감전사고 예방, 화재예방 사업 등
2. 범죄예방사업: 보안등과 가로등 설치 및 보수, CCTV설치 및 보수, 폐 공간 정비, 비상벨 설치, 도로시설물 시인성 강화 등
3. 생활안전사업: 안전 교육,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기초질

서 지키기, 주정차 질서, 불법 광고물 정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환경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정비,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정비,

4. 주거환경사업: 노후 급수관 교체, 도색, 외벽 청소, 담장정비, 무인택배함 설치 등
5. 그밖에 시장 및 시민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①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3년 단위의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마을 정책방향
2. 시민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등 협력체계
3. 연차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등
- ② 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민공동체 자부담 등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제6조의 안전마을 사업 중 재해예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제6조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안전마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마을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별 예산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마을 사업 시행)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마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마을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안전마을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
3. 그밖에 안전마을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에는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과를 설치한 동장은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공모 등) ① 시장은 안전마을사업을 매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과를 설치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집중 육성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내용의 변경) 안전마을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정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안전마을 사업은 시민공동체에서 시 안전마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과를 설치한 동장(관할 동장을 포함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시민공동체 대표는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의 동 자율방재단장이 할 수 있다.

③ 안전마을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민공동체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시민 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 6호서식)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목, 건축, 구조 등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안전마을 사업 공모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라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를 설치한 동장(관할 동장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부진한 사업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2. 사후관리 등

제14조(사업분석 및 평가)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의 안전마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안전마을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마을 사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전마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안전마을 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안전마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사업비 결정
3.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안전마을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마을 사업과 관계된 담당 국·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부천 지역 경찰공무원
3. 부천 소방 공무원
4. 부천 교육청 공무원
5. 부천시 자율방재단장
6.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안전마을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



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 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안전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안전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시행 2016.8.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407호, 2016.8.10., 제정]

□ 주요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계획·추진·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기구·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 및 운용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 및 개량 사업
2. 환경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군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홍보하고 군민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9.] [전라북도 전주시조례 제3322호, 2016.8.9., 제정]

□ 주요목적

전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전주를 바탕으로 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전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시장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4.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6. “시지정기록물”이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중에서 전주를 바탕으로 하는 기록유산으로써, 시급히 보존이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고 보존·관리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7. “시기록사랑마을”이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마을단위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주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전주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전주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

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집대상)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전주시의 주요 정책 · 사업 · 행사 또는 시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 사고 · 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 · 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 · 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 · 위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 · 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집요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는 시장에게 자신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시지정기록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지정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억 보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구술채록의 형태로 보유자의 기록 내용 전반을 기록화해야 하며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
- ③ 보존시설의 설치, 기억보유자의 구술채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시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전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4.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5. 수집계획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 구술채록비 산정 등
 6.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련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22.]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39호, 2016.8.22., 제정]

□ 주요목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목포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지·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환경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2. 해양환경 행사의 개최
3. 해양환경 정화활동
4. 해양환경단체 지원·육성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해양환경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해양환경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31호, 2016.8.2., 제정]

□ 주요목적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결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축산업·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을 태우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원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시 산하 지방공기업 · 출자출연기관 학술용역 관리 개선 요구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2013~2015년) 각종 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등 발주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86건에 778억 원 규모로 밝혔다.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학술 및 기술용역 발주 현황(2013~2015)]

(단위 : 억원 %)

구분	용역건수	계약금액	비고
부산교통공사	86	326억	
부산도시공사	53	423억	
부산관광공사	17	2,3억	
부산환경공단	13	4.2억	
부산시설공단	92	15,3억	
스포원	25	7억	
계	286건	778억원	

하지만 교통공사, 도시공사 등 6개 공기업(관공공사제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86건 중 52%인 149건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의 품질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학술 및 기술용역 발주 현황(2013~2015)]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계	비중
용역건수(A)	42	115	129	286	100%
수익계약	16	70	63	149	
수익비중(%)	38%	61%	49%	52%	
경쟁입찰	26	45	66	137	
예산액(B)	269억	197억	409억	875	
계약액(C)	296억	155억	327억	778억	
C/B	110%	79%	80%	89%	

정명희 의원에게 따르면, 시산하 기관에서 학술용역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제도적 장치와 관리·운영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적하였다.

첫째, 학술용역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는 점 둘째, 학술용역의 사전심사제도 부재와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셋째, 해마다 유사 용역의 추진되고 있지만, 용역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정 의원은 부산시 산하기관의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부산시 산하기관의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에 대한 관련 학술용역 관련 지침서를 시급히 마련해야하고 둘째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 심사 기능 강화는 물론, 학술용역의

사후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야 하고 셋째는, 시 차원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한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명희 의원은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학술용역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신속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유해화학물질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9월 8일(목)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이미옥 의원 주재로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노동센터와 함께 ‘수은중독, TCE배출 사건을 통해 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 생활 환경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철갑 조선대학교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박삼성 민주노총 광주본부법률원 변호사,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철중 광주시환경생태국 사무관, 김경희 환경운동연합정책실장, 정진아 광산구의회 의원, 김진오 금호타이어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발제는 이철갑 교수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과 세방산업 검증위원회의 활동 방향’, 박삼성 변호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적기준 및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의 실태’, 김신범 실장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종합대책 사례 및 안전한 산단만들기’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재한 이미옥 의원은 ‘세방산업 TF가 활동하는 동안에도 풍영정천에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재난피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마련

대전시의회 안필웅 의원(동구3, 새누리당)은 제227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으로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용전동 가스폭발 화재 사고’의 조치 상황 등에서 아쉬웠던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적용 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다.

안필웅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관 중심의 신속한 피해수습과 생계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난피해자들은 피해현황·사고수습 절차·피해조사·피해지원 계획 등 정보의 제공과 설명, 재난피해자의 의견수렴을 바라고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은 9월 22일(목)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9월 30일(금)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재난대응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대전에서 가스폭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더 신속하고 체계적이면서 재난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재난대응 대책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특강 실시

강원도의회에서는 9월 8일(목)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제1과제인 「생활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직원, 도 및 도 교육청 의회업무 관계자, 시군 의회사무과장을 대상으로 생활자치 특강을 실시했다.

생활자치 특강은 「생활자치」라는 단어가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생활자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와는 어떤 또 다른 특성을 갖는지, 생활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 여러 면에서 생활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것이었다.

이번 특강은 “생활자치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생활자치가 필요한 이유 △생활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및 기대효과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및 공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초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선임연구위원이 강의했다.

강원도의회 김동일 의장은 “이번 특강이 도의원님들과 시군 의회 직원분들이 생활자치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아갈 생활자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전라북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월 22일(목) 오전 10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국주영은 의원과 송지용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사실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 놓고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때문에 성 착취를 당하지 않은 여성근로정신대도 종전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결혼과 사회생활에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최희순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선생님이 ‘일본의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배고픔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과 명예회복 활동을 하고 있는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 후지코시 시절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 등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전시 여성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성적 착취가 없었다고 해서 인권유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상처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자라는 사실마저 감추는 이 비극적 현실은,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식이 미치지 못한 가운데, 현재 광주시, 전라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선택으로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비록 제한적 지원이지만, 이 ‘조례’는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대토론회 개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9월 8일(목) 오후 2시 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 불황에 따른 건설 경기가 장기간 동안 침체되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명규 의장을 비롯한 이창호(구례)·전정철(담양 2)도의원과 공사·계약담당 공무원, 종합·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악영향을 공감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기태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전남도가 실천할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조례 제·개정이나 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덕 박사는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지자체 투자 재원 확충방안 모색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은 “건전한 하도급 거래 문화조성을 위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며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남지역 건설업체 주도로 기획건설시장 개척과 농어촌 미니복합개발사업 진출 및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산하종합기술(주) 최인준 대표는 “용역발주시 지역용역사의 참여기회 확대와 설계용역 PQ 평가제도의 기술자 경력·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완화 등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등(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 및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제7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사무분장의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이첩(제12조제1항)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밖에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하도록 함.

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제17조 및 별표 1)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함.

2)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경조사비,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마.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제25조 및 별표 2)

1) 공무원과 자격·임용·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2)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함.

바.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7조)

1)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소속기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하여 받은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함.

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제39조)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77호, 2016.9.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 등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등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을 지정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9.13.] [행정자치부령 제81호, 2016.9.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따른 지역 업체로 인정하던 것을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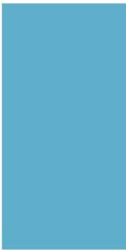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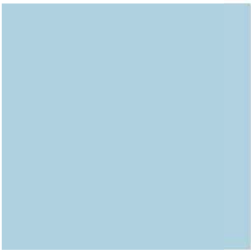
[시행 2016.9.8.] [총리령 제1321호, 2016.9.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구역 결정 등의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등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지번·지목 및 면적 등과 함께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시설과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에는 소하천시설의 구조·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의 주기·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인천광역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16-0199, (회신일자)2016-08-26

【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원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제1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제2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고 함)은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대책본부장,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자연재난의 경우와 달리 사회재난은 그 유형·규모 및 피해양상이 다양하여 이를 사전에 정형화하여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는 것 역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지방의회가 최종적인 제·개정권한을 가지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지역대책본부장의 위 지원기준 확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지원기준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강원도 속초시 -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안전번호)의견16-0183, (회신일자)2016-07-29

【질의요지】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241 참고), 조례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그 적용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는바, 그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점,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조례의 제명 및 그 조례의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중복 기재됨에 따라 입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약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등 관련)

(안전번호)의견16-0159, (회신일자)2016-08-16

【질의요지】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홍천군 조례안”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홍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이하 “지회”라 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제1조), 제4조에서는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로 ‘복장 및 장비’를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군수가 지회에 대하여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110 의견 참조), 위 별표 12에 따르면 “상시착용 피복 및 개인장구 구입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그 중 ‘피복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바,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는 ‘피복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홍천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경비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1. 17. 회신 14-0277 의견 참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비” 보조에 관한 근거규정이지만 홍천군 조례안에서 규정한 복장 및 장비와 같은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9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